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0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82545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인천지방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7구합51796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. 25.
판 결 선 고	2018. 2. 8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. 5. 2.[1] 한 취득세 26,115,480원[2]의 부과처분 및 2011. 7. 1.[3] 한 재산세 4,737,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.

1)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'2011. 5. 13.'의 오기로 보인다.
2)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'취득세 23,741,360원, 농어촌특별세 2,374,120원'의 오기로 보인다.
3)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'2011. 7. 5.'의 오기로 보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02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"취득세 24,453,600원"을 "취득세 23,741,360원(=본세 18,873,81원 + 가산세 4,867,550원)"으로 바꾼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"건축물대장에도"부터 제21행의 "이루어진 점"까지를 "원고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며, 건축물대장에도 원고 명의로 '소유자등록'이 이루어지는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"으로 바꾼다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김복형

판사 남양우